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0,209,713	10,506,291
일반회계		316,076,463	9,482,294
특별회계		34,133,250	1,023,998
	기타특별회계	34,133,250	1,023,99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19,471	27,584
	기반시설특별회계	39,171	1,175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8,000	6,24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87,461	74,624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1,440,560	643,217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72,704	8,18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36,799	7,104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71,807	2,154
	상수도특별회계	4,430,365	132,911
	수질개선특별회계	85,606	2,568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831,238	114,937
	당수 어 양식 사 업 특 별 회 계	51,000	1,530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59,068	1,772

- 제 2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33,924천원으로 한다.
- 제 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7,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